

심사보고서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52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6.)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오선미)

가.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 및 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 또는 상이한 조항을 정비 하며,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 · 보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청소년시설 명칭 등 변경
 -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와 조례명을 일치시키고자 ‘강남구립’ 을 ‘강 남구’ 로 변경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센터로, 일원청소년독서실을 강남일원독서실로 시설 명 변경, 청소년쉼터 삭제 등(안 별표 1)
- 다둥이 사용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의 합리적 부과 기준 마련
 - 다자녀 기준 변경(3자녀→2자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제

2항제8호)

-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2)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정비
 - 근거 법 조항에 맞게 조문 정비 및 간소화(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에 따라 관련 조례와 중복 또는 내용이 상이한 조항 삭제(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안 제8조제4항)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지침’, ‘민간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과 중복 내용 삭제(제13조, 제14조)
- 시설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안 제13조) 및 위탁 계약 해지 사유(안 제14조) 명확화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안에 10,000천원(청소년수련관 간판 교체) 반영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조례안 및 별표
 - (2) 입법예고(2024. 9. 27.~2024.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체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3개의 장, 15개 조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립 → 강남구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상위법 인용 사항 단순화 및 조문 정리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상위법 인용 사항 단순화 및 조문 정리
제3조(설치)		
제4조(적용범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설치)	·조문 내용에 맞게 조 제목 변경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청소년시설 이용 우선 대상자를 청소년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단체까지 확대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시설 사용자에 청소년 관련 단체 명시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으로 감면 대상 확대
제7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감면 조항이었으며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
제3장 운영의 위탁	제3장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현행과 동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된 내용 삭제
제11조(시설운영위원회)	제9조(시설운영위원회)	·현행 제11조와 동일
제12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	·단순 문구 정리
제13조(운영규정)		
제14조(종사자 임명)		·시행규칙, 관련 지침 중복사항 삭제
제15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단순 문구 정리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단순 문구 정리
	제13조(지도·감독)	·청소년시설 운영 감독 강화를 위한 조문 신설
제17조(위탁의 취소, 철회 등)	제14조(위탁의 해제·해지)	·위탁 해제등의 사유 명확화
제18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부칙	부칙	
별표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별표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사용료 상한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시설 사용료 상한	

나.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 일반적으로 조례 제명 규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는 조례 적용 범위 파악의 용이성, 입법 형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명 중 강남구립을 강남구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함.

- 안 제1조(목적)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중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만 명시하고 나머지 인용 사항은 삭제하여 조문을 간략히 정비하려는 것임.
- 그런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는 위임조례의 경우 목적 규정에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조례임이 목적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구립시설인 청소년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인 점, 청소년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는 안 제2조 정의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위법 명시는 불필요해 보임. 따라서 안 제1조에 명시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2021년 1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022. 1. 13.)되어 조문 번호 등의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도 조문 제목과 내용이 변경되었음.
 - 자치조례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을 인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사항이 조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다.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용어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각각의 시설에 대한 개별 정의를 두면서 규정하던 것을 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만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 12. 31.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됨.
 -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렇듯 청소년시설별 구체적인 기능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에 열거된 시설의 명칭이나 정의가 관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입법경제상 시설별 정의를 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지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이하 “구”라 한다)”고 약칭 규정을 두었으나 안 제2조 외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칭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안 별표 1)

- 안 별표 1에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명시하면서 시설명일부를 변경하고 폐쇄된 시설을 목록에서 삭제하였음.
- 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수련관→센터) 관련
 - 현행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강남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각각 “역삼청소년센터와 강남청소년센터”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를 나열하면서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불필요한 시설명 변경은 자칫 법 집행상의 혼선과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 간판 교체 등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발생을 유발하므로 법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원청소년독서실”을 “강남일원독서실”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은 2024년 4월 시설 리모델링 후 재개관 시 시설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계속해서 안 별표 1에서는 강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류 및 기능을 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제7장-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제8장-청소년복지시설을 구분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7장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 법령상의 시설 구분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수정의견은 다

음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복지 시설	상담시설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또한 개정안에서는 강남구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삭제하였는데, 부서 자료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은 2021년 12월 폐쇄되었기 때문임. 시설 폐쇄 등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마.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안 제2장-제6조, 제7조 및 별표 2)

○ 안 제2장에서는 안 제6조(시설의 사용 등)에 청소년시설의 사용자 범위 및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사용료 등) 및 별표 2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제1항에는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적절히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수정의견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건 심사 과정에서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경우 그에 따라 문구 변경이 필요함.

○ 또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사용료”로 약칭하고 있고, 안 별표 2의 표 안에서도 사용료, 이용료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 제62조제2항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은 감면 대상을 규정한 것인데 조례에는 감면 대상만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강남청소년수련관 및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감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그런데 위 시설별 감면 기준에서 보듯 현행 조례상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아래 표 참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서의 승인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동일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감면율이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부서의 승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감면 기준과 감면율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의회나 집행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이 감면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료 결정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조례로 시설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면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 법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감면율 등 감면 요건의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단체 등” → “청소년단체” 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약칭 표현 또한 오류가 있어 (이하 “운영” 라 한다) → (이하 “운영” 이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 개정안에서는 제7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를 삭제하였는데, 동 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2020. 6. 5.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문의 유효기간은 2020. 12. 31.까지였음.
- 일부 조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문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형식상 남아있게 되어 자칫 구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정비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 참고로 2022. 5. 6. 조례 개정 시 유효기간이 종료된 동 조문을 삭제 조치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 운영 및 정비에 있어서 부서의 지속적이고 세밀한 관심이 요구됨.

바.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 중 “청소년 단체 등” → “청소년단체” 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④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의 위탁기간, 재계약 기간과 동일함.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안 제8조제4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사. 청소년운영위원회(안 제10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항은 수탁기관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즉, 해당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수련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외에 이용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포함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규정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상위법상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향후 우리구 규칙 개정이 요구됨.
- * 우리구 규칙에서는 위원장이라는 용어가 아닌 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위원은 10명 이내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위원 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라는 용어 대신 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회장은 정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그 밖의 사항

- 안 제12조제4항 중 “운영·관리”는 안 제7조제4항에서 “관리·운영”을 “운영”으로 약칭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 약칭된 표현인 “운영”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 그동안 잘못된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점, 폐쇄된 시설 내역을 삭제하지 않아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자치법규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바, 행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가 통일성이 없고 청소년시설 명칭이 상위법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감면 기준을 수탁기관에 판단에 맡기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52호

제안일자 : 2024.11.26.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인용 사항 등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략히 정비
- 관계 법령상의 시설 구분을 반영
- 조례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 약칭 등 수정

2. 수정주요내용

- 조문의 내용, 자구 수정 및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명칭 변경(안 별표1)
- 혼용된 용어 통일을 하고자 함(안 제 6조, 안 제7조, 안 제8조제3항,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를 “조례는 서울특별시” 로 한다.

안 제2조 중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 를 “강남구” 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을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 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 등)” 을 “(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 를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 을 “이용” 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등)” 을 “(이용료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 를 “별표 2” 로, “시설이용료” 를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로, “ “사용료” ” 를 “ “이용료” ” 로, “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을 “이용자에게” 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를 “이용자” 로, “사용료를” 을 “이용료를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부모 가족” 을 “한부모가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 를 “이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라 한다)을 청소년단체 등” 을 “(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 로, “사용자로부터 제1항의 사용료” 를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이용료”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를 징수” 를 “이용료를 징수” 로, “사용료를 정하고” 를 “이용료를 정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용자에게 사용료” 를 “이용자에게 이용료”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청소년 단체 등” 을 “청소년단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사용” 을 “이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료” 를 “이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수탁기관은 청소년 활동” 을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 을 “청소년센터 수탁기관” 으로, “수련시설” 을 “시설” 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사용료” 를 “이용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관리” 를 “운영” 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3호 중 “계속 할” 을 “계속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전” 을 “30일 전” 으로 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한다.

안 별표 1, 안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서울특별시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강남구 ----- ----- -----.</p>
<p>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p>	<p>제2장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p>
<p>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p> <p>②·③ (생략)</p>	<p>제6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 -----.</p> <p>1. (원안과 같음)</p> <p>2. ----- 이용 ----- -----</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p>	<p>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p>

등(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 8. (생략)

③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라 한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자로부터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고, 이를 구청

“이용료” 라 한다)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이용자----- 이용료를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

1. ~ 4. (원안과 같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 8. (원안과 같음)

③ 이용료-----

-----.

④ -----
-----(이하 “운영”
이라 한다)-----
청소년단체-----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이용료-----
-----.

⑤ ----- 이용료를 징수----- 이용료를 정하고-----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원안과 같음)

⑦ 이용자에게 이용료-----

-----.

제8조(운영의 위탁) ① -----
----- 청소년단체-----
-----.

② (원안과 같음)

③ -----

-----.

1. ----- 이용 -----

2. ----- 이용료-----

<삭 제>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사용료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③ (생략)

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관리 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원안과 같음)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 이용료 -----
-----.

②·③ (원안과 같음)

④ ----- 운영 -----

-----.

제14조(위탁의 해제·해지) ① ----

-----.

1. (원안과 같음)

2. (안과 같음)

3. ----- 계속할 ----

② -----
----- 30
일 전-----
-----.

③·④ (생략)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④ (원안과 같음)

<삭제>

신 · 구별표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활동 시설	수련시설	역삼청소년센터	청소년들에게 교 육·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 공하여 청소년들 의 올바른 품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논현로64 길 7	수련시설	역삼청소년 센터	청소년들에게 교 육·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 공하여 청소년들 의 올바른 품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논현로64 길 7
		강남청소년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강남청소년 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이용시설	강남일원독서실	청소년과 지역주 민의 독서문화 진 흥 및 지역커뮤니 티를 활성화하는 역할 수행	강남구 개포로 116길 21	이용시설	강남일원독서실	청소년과 지역주 민의 독서문화 진 흥 및 지역커뮤니 티를 활성화하는 역할 수행	강남구 개포로 116길 21
복지 시설	상담시설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 담과 보호, 교육, 자립, 가정·사회 로의 복귀를 지원 하기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광평로 144	<u>청소년복지지원기관</u>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 담과 보호, 교육, 자립, 가정·사회 로의 복귀를 지원 하기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광평로 144

신 · 구별표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별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이용료 상한 및 감면기준 1. 시설이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대상	1 회 이용료	월이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구분	이용료	대상	1 회 이용료	월이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 회	주2 회	주3 회	주4 회	주5 회	주6 회						주1 회	주2 회	주3 회	주4 회	주5 회	주6 회				
수영장 및 체육시설		대학생, 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수영장 및 체육시설		대학생, 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독서실		대학생, 일반인	1,000	월이용권 (성인 30,000원, 청소년 15,000원)							독서실		대학생, 일반인	1,000	월이용권 (성인 30,000원, 청소년 15,000원)									
		초·중·고생, 어린이	500																			500		
노트북실		대학생, 일반인	1,500	일일권만 사용 가능							노트북실		대학생, 일반인	1,500	일일권만 사용 가능									
		초·중·고생, 어린이	500																			500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비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u>이용료</u> 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u>이용료</u> 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원 안

2.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대 상	월 수강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대학생,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수 정 안

2.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원)

구분	수강료 대 상	월 수강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대학생,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최고 100,000원
비 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p> <p>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p> <p>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p> <p>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p> <p>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 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p> <p>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p> <p>2. 사용료 할인</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 3개소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수강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각종심리검사	-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최고 100,000원
비 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p> <p>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p> <p>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p> <p>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p> <p>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 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p> <p>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p> <p>2. 수강료 할인</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유아예체능단 재원생 : 20% 할인</p>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 3개소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수강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 신 설 >

3.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자	감률	증빙서류
· 제7조제2항제1호~제6호, 제8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독서실 1일 이용권을 사용하는 경우	100%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30%	류	-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 병역명문가증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단, 수영장 월 사용료에 한정)	10%	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류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 등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게 우선

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

제6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7.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8.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③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 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한 이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제9조(시설운영위원회)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

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이용료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장비, 비용, 그 밖에 수탁사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 사항이나 명령, 처분, 청소년 시설 운영 규정 및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

지(이하 “해제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 또는 협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활동 시설	수련시설	역삼청소년센터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 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논현로64길 7
		강남청소년센터		강남구 영동대로131길 26
	이용시설	강남일원독서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 커뮤니티를 활 성화하는 역할 수행
청소년복지지원기관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 수행	강남구 광평로 144

[별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이용료 상한 및 감면기준

1. 시설이용료

(단위: 원)

이용료 구분	대상	1 회 이용료	월이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및 체육시설	대학생, 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독서실	대학생, 일반인	1,000	월이용권 (성인 30,000원, 청소년 15,000원)						
	초·중·고생, 어린이	500							
노트북실	대학생, 일반인	1,500	일일권만 사용 가능						
	초·중·고생, 어린이	500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비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원)

구분	수강료 대상	월 수강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최고 100,000원 						
비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 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p>2. 수강료 할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유아예체능단 재원생 : 20% 할인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 3개소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수강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3.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제2항제1호~제6호, 제8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독서실 1일 이용권을 사용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50%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 병역명문가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단, 수영장 월 사용료에 한정) 	1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설 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 등 사인물 교체 비용
· 10,000천원(5,000천원 × 2개소) ※ 2025년도 예산안 반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시설 명칭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10,000천원)은 한시적 경비에 해당함

4.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복지7급 성명 최요섭(02-3423-5845)